

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유 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x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커졌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 < .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 무죄표상, 유죄판단 기준, BRD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0844).

† 교신저자: 한유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N15(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yuhwahan82@gmail.com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도와 참심제도가 혼합된 형태(장중식, 2009; 정진연, 2006)로 영미권 국가들의 일반적인 배심재판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그중 배심단 평결이 재판부의 최종판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법학 및 법심리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예를 들면, 김대성, 2018; 장중식, 2009; Park, Han, & Seong, 2010).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 문제는 평결의 권고적 효력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영미권 국가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guilty)인지 유죄가 아닌지(not guilty)를 판단하는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innocent)인지를 판단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과 3항).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범주와 영미권 국가의 ‘유죄아님’ 범주는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범주이다. 두 범주는 모두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무죄’와 ‘유죄아님’은 법적으로는 동의어이지만 법적인 맥락을 벗어나면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일부 법률가들은 ‘무죄’와 ‘유죄아님’의 의미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한다(이승택, 2017). 이들은 두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나 치환 가능한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고 유의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무죄’ 범주와 ‘유죄아님’ 범주를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죄’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미(죄가 없음)와 법률적 의미(법률상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국

립국어원, 2022).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무죄’ 의미는 법률적 의미의 ‘무죄’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적판단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죄’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무죄표상(representation of ‘innocent’)’이라고 명명하고 이 표상이 사법판단 상황에서 법률적 의미의 ‘무죄’에 대한 표상(개념)과 충돌하여 유죄판단 기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an, 2021). 또한, 이 연구는 법이 요구하는 유죄판단의 기준보다 낮은 일반인들의 실제 유죄판단 기준이 법이 요구하는 유죄판단 기준보다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평결범주의 효과가 일반인들의 ‘무죄표상’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개념인바, ‘무죄표상’과 유죄판단 역치의 관련성을 재검증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두 가지 유죄판단 역치가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을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특성(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결범주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사실판단자(fact-finder)로서 법적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영미권의 배심재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가능한 평결의 범주는 일반 배심재판의 ‘유죄/유죄아님’이 아닌 ‘유죄/무죄’이다. 이 범주는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사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으로부터 법률적 ‘무죄’의 의미가 피고인의 무죄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평결범주에서의 ‘무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무죄’의 의미 즉,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음(국립국어원, 2022)’이 아닌 ‘유죄아님’을 의미한다.

법조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형사재판의 평결범주와 관련된 조항(형사소송법 제325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구자룡, 2021; 이승택, 2017). 이 의견의 근거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무죄(無罪)’는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한국 형사소송법이 근간을 두고 있는 영미법의 ‘유죄아님’과 다르다는 점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권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무죄선고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때 ‘기소된 범죄 혐의를 벗겨준다’ 또는 ‘공소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유죄의 증거가 부족함

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무죄’를 평결범주로 사용할지 ‘유죄아님’을 평결범주로 사용할지가 실무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전성훈, 2020).

형사사법체계는 사실판단자의 유죄판단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판단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로 대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은 판단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아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여준다. 어떤 피고인이 ‘유죄아님’으로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었음을 판결 자체로 알 수 있다. ‘유죄아님’ 판단은 피고인의 유죄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된다면, 사람들은 법률적인 의미의 ‘무죄’ 대신에 자신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무죄’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고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혐의를 받는 범죄행위(살인)를 하였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실제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살인한 것이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함)에 그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들은 ‘무죄’라는 표현(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죄가 의심되지만 ‘무죄’ 판결된 경우, 이 결정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단이 피고인의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의 공분을 사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쉽게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

는 사례¹⁾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 사법체계에서 사용되는 ‘무죄’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죄 vs. 유죄아님

피고인의 유죄가 증명된 정도 또는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일 가능성(이하 유죄가능성)을 범주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평결범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즉, 판단자들에게 ‘무죄’ 범주와 ‘유죄아님’ 범주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Gannon과 Ostrom(1996)은 부정직함(dishonesty)과 정직하지 않음(not honest)을 예시로 들면서 “부정직함의 범주는 단지 정직함의 정반대 또는 부정이 아니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식구조이다. 그것은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단지 궁정성 또는 정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두 범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p. 338).”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실험적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예를 들면, Mayo, Schul, & Burnstein, 2004). ‘무죄’와 ‘유죄아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분되는 개념일 수 있다.

심리학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유죄, 무죄 및 유죄아님 등 평결범주의 명칭은 연구 참가자들이 반응(선택)해야 하는 반응범주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명은 응답자들이 범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돋는다.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할 때 응답자들은 범주명이 제시되면 범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한 범주의 의미를 제시된 범주명의 의미로 일

1) 여기서는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례를 의미함.

관되게 해석한다(Wildt & Mazis, 1978). 범주명이 붙여지지 않은 범주들은 리커트 척도상에 그 위치가 같더라도 응답자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ArceFerrer, 2006; Schaeffer & Presser, 2003; Schwarz, Knauper, Hippler, Noelle-Neumann, & Clark, 1991). 즉, 범주명은 선택해야 하는 범주의 의미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와 ‘유죄아님’의 의미를 언제나 법률적인 ‘무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어의 ‘무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죄’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가지는 차이가 배심원들의 ‘무죄’라는 평결범주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무죄’와 ‘유죄아님’이 서로 다른 차원의 범주가 아니더라도 즉, ‘무죄’와 ‘유죄아님’을 유죄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연속적 차원상의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개념들로 간주하더라도 두 개념의 차원상 위치는 다르다. ‘무죄’는 유죄 가능성에 전혀 없다는 의미이므로 유죄가능성 차원의 0점(원점)에 대응될 수 있으며, 이 0점의 반대쪽으로는 한계가 없다. ‘유죄’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0점보다 크다면 어디라도 대응될 수 있다. 사실판단자의 과제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이 이 연속적 차원상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판단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범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유죄가능성의 정도를 범주적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기준(판단기준, 역치)이 필요하다.

제시된 평결범주가 ‘유죄/유죄아님’인 경우, 유죄판단 기준이 정해지면 유죄아님의 기준이 동시에 정해지므로 피고인에 대한 평결을 위해 사용되는 판단기준 즉, 역치가 하나이다.

그러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사용하는 경우, 판단자들은 유죄판단 역치와 무죄판단 역치를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에 대한 심리적 표상이 있다면 유죄가능성 차원에서 ‘무죄’와 ‘유죄아님’ 범주에 대응되는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법적판단 상황에서 ‘무죄’에 대응되는 위치는 ‘유죄’에 미치지 못하는 어디라도 가능하다. ‘유죄아님’의 경우 ‘유죄’와 그 경계가 언제나 같지만, ‘무죄’의 경우 그 경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역치가 존재할 수 있다. 두 개의 역치가 존재한다면 ‘무죄’ 범주에 속하지 않는 피고인을 ‘유죄’ 범주에 할당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원칙을 벗어난다. 요약하면, 법적판단에 사용하는 역치가 하나이면서 일반적 의미의 ‘무죄’가 존재함을 가정하는 경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사용하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일반적 의미의 ‘무죄’와 법률적 의미의 ‘무죄’ 사이의 차이 때문에 법적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의사결정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된 유죄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유죄판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유죄판단 역치

피고인의 유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판단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학 및 법심리학 영역의 연구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증명 기준(이하 BRD)을 수량화하고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²⁾.

Dane(1985)은 수량화된 BRD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 판단 일치율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재판시나리오를 읽은 후 법적판단, 판결에 대한 확신감,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 등을 평정하였다. Dane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BRD를 참가자가 추정한 피고인 유죄가능성과 비교하여 예측된 법적판단 변인을 생성하였다. 이 판단은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판단으로 만약 배심원들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BRD를 역치로 사용하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죄로 판단한다면, 참가자들의 실제 판단과 이론적으로 예측된 판단의 일치율은 매우 높을 것이다. Dane(1985)은 두 판단의 일치율이 BRD를 수량화하는 방법에 따라 73%~88%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Dhami(2008)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예측된 판단과 실제 판단의 일치율을 계산한 결과 약 60%~63%의 일치율을 관찰하였다. 최근에 Han(2021)은 ‘무죄표상’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연구에서 개인의 역치(individual threshold: IT)를 추정하였고, IT와 BRD의 판단예측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BRD에 의해 예측된 판단과 실제 판단의 일치율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1에서 71.3%,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2에서는 61.7%로 나타났다. 한유화와 박광배(2017; Han, 2021에서 재인용)의 연구자료에 대한 추가분

2) BRD에 대한 수량적 해석(수량화)이나 언어적 설명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며, 관련 판례들은 Pi, Parisi와 Luppi(2018)의 각주 1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석에서는 이 일치율이 66%였다. BRD의 판단 일치율이 낮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을 위해 BRD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유화와 박광배(2018)는 Wright, Strubler와 Vallano(2011)가 제안한 집단 수준의 역치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법적판단을 위한 개인의 역치(IT)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인들이 추정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그들의 법적판단의 관계에 기초하며, 이 관계와 기소된 누군가가 유죄일 가능성(이하 기소 유죄확률)을 이용하여 개인의 유죄판단 역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대략 53%~60%의 유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IT는 약 80%의 유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BRD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IT를 이용하여 예측된 판단과 실제 판단의 일치율은 약 82%~89%로 BRD의 일치율(연구에 따라 약 61%~88%)보다 높다(Han, 2021). 이 결과는 배심원들의 실제 법적 판단에 BRD보다 낮은 유죄판단 역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죄표상

BRD는 법률로 명시된 유죄판단의 기준인 만큼 사실판단자들은 이 기준을 법적판단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법적판단에 대한 BRD의 낮은 예측율은 BRD가 법이 요구하는 이론적인 기준일 뿐이고 사실판단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법적판단 기준은 이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Han, 2021). ‘무죄표상’은 유죄판단을 위한 이론적 기준(BRD)과 IT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무죄표상’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죄의 의미(잘못이나 죄가 없음)에 대한 심리적

표상”으로 정의되며, Han(2021)은 이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BRD를 수량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BRD에 해당하는 유죄가능성을 직접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된 ‘무죄표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무죄라고 말하기 위해 무시할 수 있는 유죄가능성의 최댓값(%)”으로 정의될 수 있다. Han(2021)의 연구에서 관찰된 바, ‘무죄표상’은 IT와 정적 상관관계($r=.225$)를 가지며, 처벌욕구(desire to punish)와는 부적 상관관계($r=-.354$)를 가진다.

한유화와 이우열(2021)은 Han(2021)이 ‘무죄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질문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자극중심 측정법(stimuli-centered scaling)의 하나인 연속적 간격법(method of successive intervals)을 적용하여 비난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측정치를 산출하고, 이 측정치로부터 ‘무죄표상’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으로 개념화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무죄표상’을 “비난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행동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무죄’ 범주에 할당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비난가능성 차원에서 척도화된 행동들로 구성된 목록에 기초하여 측정된 ‘무죄표상’은 IT와 .196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D와는 -.243의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an(2021)의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과 한유화와 이우열(2021)의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서로 관련이 없었고, IT 및 BRD와의 관련성도 비일관적이

었다.

'무죄표상'은 이론적인 유죄판단 기준인 BRD로부터 실제 개인의 유죄판단 기준 추정치인 IT를 멀어지게 하는 즉, IT를 낮추는 요인으로 제안되었으므로, 개념적으로는 '무죄표상'이 강할수록 IT는 낮아져야 한다. 한유화와 이우열(2021)은 이 점을 언급하며 행동목록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개념에 대한 측정치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은 측정이 정교하지 못하거나(오차가 많음) 타당하지 못하다는(측정하려는 개념을 측정하지 못함) 것을 의미하므로 '무죄표상'과 유죄판단 역치를 비롯한 법적판단 관련 개념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법적판단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제시되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에 따라 그들의 법적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법적판단에 대한 평결범주의 효과는 평결범주의 명칭으로부터 연상되는 범주명의 의미 때문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유죄, 무죄, 유죄아님 등의 범주명을 들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유죄아님'의 평결범주와는 달리 '무죄'라는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의미의 '무죄(유죄증명이 불충분함)'와 함께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나 죄가 없음)'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떠오른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에 대한 표상 즉, '무죄표상'은 양적으로 치환된 법률적인 의미의 유죄와 무죄의 경계 즉, 유죄판단의 역치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낮은 유죄판단의 역치는 유죄판단을 증가시킬 것이

므로 본 연구는 '유죄/무죄' 평결범주를 제시받았을 때 '유죄/유죄아님' 평결범주를 제시받았을 때보다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 1).

Han(2021)은 추정된 일반인들의 개인적인 역치(IT)가 이론적 유죄판단 기준인 BRD보다 낮은 현상이 '무죄표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죄표상'이 IT를 낮춘다면 '무죄표상'이 강할수록(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어야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IT가 BRD로부터 멀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무죄표상'이 강할수록 BRD와 IT의 차이(이하 역치변화량)가 클 것이다(가설 2). 그러나 '무죄표상'은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는 경우보다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는 경우에 더 연상되기 쉬우므로 '무죄표상'과 역치변화량의 관련성은 제시된 평결범주에 따라 다를 것이다(가설 3).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평결범주의 효과는 '무죄표상' 및 IT의 개념과 그들의 관계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죄표상'과 IT는 BRD가 배심원의 법적판단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Dane, 1985; Dhami, 2008)을 지적하면서 제안된 개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BRD와 IT 중 무엇이 배심원의 법적판단을 더 잘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두 변인의 역치료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BRD보다 IT의 예측-실제 판단일치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Han, 2021)에 비추어 볼 때 BRD보다는 IT가 배심원들이 법적판단을 더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역치료 간주되는 두 변인은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와 상호작용하여 법적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연구는 법적판단에 대한 BRD와 IT

의 주효과 이외에 각 변인과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설 4).

방 법

연구설계 및 독립변인의 조작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법적판단 상황에서 판단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결범주이다. 평결범주는 두 수준으로 조작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죄/무죄’의 평결범주와 영미권의 일반적인 배심재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로 조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하나인 IT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유죄가능성 평정치의 변량이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검증을 목표로 하는 독립변인인 평결범주 이외에 유죄가능성 평정치의 충분한 변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유죄가능성을 두 수준(낮은 유죄가능성 vs. 높은 유죄가능성)으로 조작하였다. 즉,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평결범주와 피고인 유죄가능성이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평결범주는 재판시나리오에 포함된 판사의 법률지침에서 법적판단에 대한 안내 문구를 변경함으로써 조작되었다. ‘유죄/무죄’ 조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되었고, ‘유죄/유죄아님’ 조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유죄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IT 추정을 위하여 부수

적으로 조작된 변인인 유죄가능성은 재판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을 변경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참가자들이 평정한 각 시나리오에 대한 검찰의 유죄증명 정도는 ‘낮은 유죄가능성’ 조건에서 41.02(표준편차=21.64)%, ‘높은 유죄가능성’ 조건에서 58.13(표준편차=22.11)%로 나타나서 두 조건의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t(135)=-4.554$, $p<.001$.

참가자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업체에 등록된 만 20세~50세 일반성인 중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한 2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40명의 자료 중 확률추정 문항들을 유심히 읽지 않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³⁾을 한 참가자를 불성실한 참가자로 간주하였고, 103명의 자료를 제외한 137명(여성 65명, 47.4%)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평균 34.9세(표준편차: 7.8세)였다. 각 실험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낮은 유죄가능성 - 유/무죄’ 조건에

3) 참가자가 추정한 BRD가 기소유죄확률보다 작고, BRD가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보다 작은 경우 응답을 제외하였다. BRD는 유죄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소된 누군가에 대해 유죄증거를 듣기 전의 유죄가능성 추정치가 BRD보다 클 수 없으며,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죄가능성의 최댓값(‘무죄표상’)도 이 값보다 클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정치를 제공한 참가자에게 기소된 누군가는 언제나 유죄이며, 이 참가자는 (무죄판단 기준보다 유죄판단 기준이 더 낮으므로) 유죄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무죄판단하고, 유죄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유죄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9명(21.2%), '낮은 유죄가능성 - 유죄/유죄아님' 조건에 33명(24.1%), '높은 유죄가능성 - 유/무죄'조건에 41명(29.9%), '높은 유죄가능성 - 유죄/유죄아님' 조건에 34명(24.8%)이었다.

재판시나리오

본 연구는 측정이론에 기초하여 배심원의 정확성, 능력 및 재판의 난이도를 추정한 Park(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재판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재판시나리오는 공원의 여자화장실에서 한 중년 여성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 측 증언, 변호인 측 증언 및 판사의 법률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이었다. 재판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피해자 떤의 증언, 사건 현장의 목격자 및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증언이었고, 피고인의 유죄를 반박하는 증거는 피해자 시신의 부검결과와 소지품의 과학적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원의 증언, 피고인 친구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이었다. 본 연구는 Park(2011)의 연구에서 낮은 유죄가능성으로 조작되었던 시나리오의 양 측 증언을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로 변경하여 높은 유죄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고, 낮은 유죄가능성의 시나리오는 Park(2011)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판사의 법률지침은 실험조건에 상관없이 제시된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의 증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죄/무죄' 조건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라는 지침, '유죄/유죄아님' 조건에서는 '유죄인지 또는 유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측정변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은 기소유죄확률, BRD, 법적판단, 판단확신감, 유죄가능성, '무죄표상'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었다. IT는 유죄가능성, 법적판단 및 기소유죄확률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추정되었고, '무죄표상'은 Han(2021)의 확률추정 방법과 한유화와 이우열(2021)에서 제안된 행동목록을 사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기소유죄확률은 기소된 누군가가 유죄일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로 '누군가 기소되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일 확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BRD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을 유죄가능성 차원에서 수량화한 값으로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고 판단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피고인 유죄 가능성의 최솟값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면 100%,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도 유죄판단할 수 있다면 0%에 가깝도록 합리적 의심이 없는 유죄판단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유죄가능성의 최솟값을 응답해 주세요.'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법적판단과 판단확신감은 실험조건에 따라 제시된 재판시나리오의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실험조건에 따라 유죄/무죄 또는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 중 선택)과 그 판단을 확신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유죄가능성은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0에서 100까지의 퍼센트(%)로 나타내 주십시오.'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무죄표상'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무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 유죄 가능성의 최댓값은 무엇입니까? 무죄인 사람

은 유죄일 가능성 매우 낮아야 한다면 0%, 매우 높더라도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면 100%에 가깝도록 유죄가능성의 최댓값을 응답해 주세요.'의 문항(확률추정 방법)과 비난가능성 차원에서 척도화된 33개 행동들을 제시한 후 '다음 중 법률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의미의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문에 따라 선택된 행동들에 기초하여 측정(행동목록 방법)되었다. 예를 들면, 행동목록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기',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이 포함되며 두 행동은 각각 2.83과 2.94의 비난가능성 척도치를 갖는다. 개별 참가자가 선택한 행동들의 중앙값이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된 참가자들의 '무죄표상' 측정치이다. IT는 유죄가능성을 사용하여 유죄판단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회귀모형의 로짓(logit, $\ln(p/100-p)$)을 구성하는 p 에 기소유죄확률(%)을 대입하여 x 를 역산(예측된 유죄가능성)하는 방법으로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계산되었다.

절차

실험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행동목록을 이용한 '무죄표상'의 측정을 위한 문항들에 응답한 후 기소유죄확률과 BRD를 측정하는 문항에 차례로 응답하였다. 이후에 무작위로 네 개의 실험조건 중 하나에 할당된 참가자들에게 각 조건의 재판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재판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 판단확신감, 유죄가능성, '무죄표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확률추정)에 응답하였고, 실험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실험을 마쳤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 승인(CBNU-201808-BMSB-689-01)을 받아 진행되었다.

결과

기술통계

실험조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표준 편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

유죄가능성	평결범주	추정된 유죄가능성	무죄표상 (행동목록)	무죄표상 (확률추정)	IT	BRD
낮은 유죄가능성	유죄/무죄	44.66(18.94)	1.23(0.63)	44.83(26.68)	63.93(4.11)	76.24(19.85)
	유죄/유죄아님	45.73(18.58)	1.26(0.67)	41.48(27.66)	64.32(5.14)	76.61(18.45)
	전체	45.23(18.60)	1.24(0.65)	43.05(27.03)	64.13(4.65)	76.44(18.96)
높은 유죄가능성	유죄/무죄	62.27(19.30)	1.18(0.63)	43.32(26.19)	58.37(3.46)	76.29(19.82)
	유죄/유죄아님	59.97(24.71)	1.18(0.76)	52.00(30.51)	59.80(3.78)	82.71(16.08)
	전체	61.23(21.79)	1.18(0.89)	47.25(28.37)	59.01(3.65)	79.20(18.38)
전체		53.99(21.85)	1.21(0.67)	45.35(27.75)	61.32(4.85)	77.95(18.63)

참가자들이 추정한 피고인 유죄가능성은 조작된 유죄가능성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135)=-4.567$, $p<.001$. 낮은 유죄가능성 조건의 유죄가능성은 45.23%(표준편차 = 18.60)였고 높은 유죄가능성 조건의 유죄가능성은 61.23%(표준편차 = 21.79)였다. 두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 IT 및 BRD는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 측정치는 1.21(표준편차=0.67)이었고,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45.35%의 유죄가능성(표준편차=27.75)으로 나타났다. IT는 평균 61.32%의 유죄가능성(표준편차=4.85)으로, BRD는 평균 77.95%의 유죄가능성(표준편차=18.63)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변량을 얻기 위해 조작된 변인에 대한 측정치인 피고인 유죄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실험조작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심리적 개념들이므로 실험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결범주와 법적판단

본 연구의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평결범주와 법적판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두 변인의

이원교차분할표 및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은 그들이 제시받은 평결범주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0.243$, $df=1$, $p=.622$.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일반인들의 유죄판단 비율(41.4%)이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일반인들의 유죄판단 비율(37.3%)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무죄표상', IT, BRD 및 역치변화량의 관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 IT, BRD 및 역치변화량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행동목록 방법과 확률추정 방법을 사용한 '무죄표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34$, $p=.689$.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한 '무죄표상'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IT, BRD 및 역치변화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반면에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한 '무죄표상'은 BRD 및 역치변화량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r=-.254$, $p<.01$; $r=-.237$, $p<.01$. IT와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한 '무죄표상'은

표 2. 평결범주와 법적판단의 이원교차분할표 및 교차분석 결과

		법적판단			χ^2
		무죄	유죄	전체	
평결범주	유죄/무죄	41(58.6%)	29(41.4%)	70(100.0%)	0.243 ($p=.622$)
	유죄/유죄아님	42(62.7%)	25(37.3%)	67(100.0%)	
전체		83(60.6%)	54(39.4%)	137(100.0%)	

표 3. '무죄표상', IT, BRD 및 역치변화량의 상관관계

	무죄표상 (행동목록)	무죄표상 (획률추정)	IT	BRD
무죄표상(행동목록)(N=137)	1			
무죄표상(직접추정)(N=137)	-.034	1		
IT(N=135)	-.140	.068	1	
BRD(N=137)	-.254 ^{**}	-.016	.370 ^{***}	1
역치변화량(N=135)	-.237 ^{**}	-.019	.116	.966 ^{***}

** $p < .01$, *** $p < .001$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r = -.140$, $p = .104$.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한 '무죄표상'은 작은 값이 강한 '무죄표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죄표상'과 BRD 및 역치변화량과의 부적 상관관계는 무죄표상이 강할수록 BRD가 높아지고 역치변화량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와 BRD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70$, $p < .001$. 이것은 BRD를 높은 수준의 유죄가능성으로 해석할수록 IT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치변화량은 BRD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결법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⁴⁾

역치변화량과 '무죄표상'의 관계가 일반인들이 제시받는 평결법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3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치변화량에 대한 평결법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4) 이후의 분석에서는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을 사용하였음. 측정치 선택의 논리는 논의에 제시되었음.

역치변화량에 대한 평결법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효과 모형과 상호작용 효과 모형 모두에서 '무죄표상'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각 $B = -6.227$, $p < .01$; $B = -10.931$, $p < .001$. 상호작용 효과 모형에서 평결법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8.654$, $p = .051$. 상호작용 효과 모형의 R^2 증가량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 R^2 = .027$, $F = 3.865$, $p = .051$. 평결법주의 주효과는 주효과 모형과 상호작용 효과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 > .05$).

평결법주와 '무죄표상' 및 역치의 관련성 파악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역치변화량에 대한 평결법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죄/무죄'의 평결법주를 제시받은 조건과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법주를 제시받은 조건의 '무죄표상'과 역치변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4. 평결범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변인	B	SE	β	t	F	R^2	ΔR^2
상수	15.536	2.030		7.652***			
평결범주	1.600	2.926	.046	0.547	4.07*	.058	
무죄표상	-6.227	2.216	-.237	-2.809**			
상수	15.489	2.009		7.710***			.027
평결범주	1.596	2.895	.046	0.551			($p=.051$)
무죄표상	-10.931	3.246	-.417	-3.368***	4.06**	.085	
평결범주×무죄표상	8.654	4.402	.243	1.966			
							($p=.05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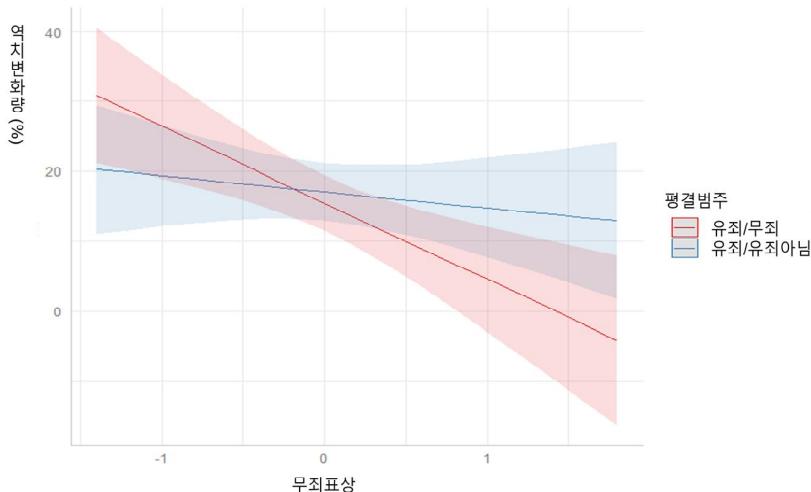


그림 1. 역치변화량에 대한 평결범주와 '무죄표상'의 상호작용 양상
주. '무죄표상'의 값은 평균중심화(centering)된 값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조건에서는 '무죄표상'이 증가할수록 역치변화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조건에서는 '무죄표상'이 증가할수록 역치변화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조건에서는 '무죄

표상'이 강해질수록('무죄표상' 측정치가 작아질수록) 역치변화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 조건에서는 '무죄표상'이 강해질수록 역치변화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죄표상'과 역치변화량의 부적관계는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더 강한 경향이 있

었다.

역치로서의 BRD와 IT 비교

BRD와 IT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회귀모형은 유죄가능성과 역치(BRD와 IT) 및 유죄가능성과 역치의 상호작용으로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두 로지스틱 회

표 5. 역치로서의 BRD와 IT 비교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인	B	SE	Z	OR	<i>deviance</i>
상수	-1.094	0.336	-3.258**	0.335	
유죄가능성	0.196	0.038	5.170***	1.217	72.226
BRD	-0.047	0.017	-2.699**	0.954	(<i>df</i> =133)
유죄가능성×BRD	0.000	0.002	0.003	1.00	
상수	-0.838	0.320	-2.616**	0.433	
유죄가능성	0.218	0.044	4.888***	1.244	70.547
IT	-0.128	0.068	-1.893(<i>p</i> =.058)	0.880	(<i>df</i> =131)
유죄가능성×IT	-0.011	0.007	-1.707(<i>p</i> =.088)	0.989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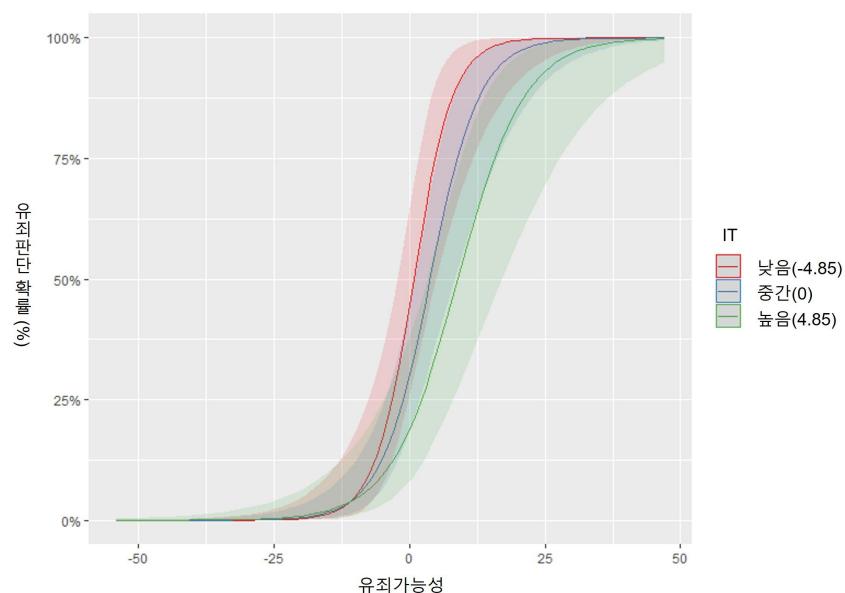


그림 2. 유죄판단 확률에 대한 IT와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양상
주. 유죄가능성과 IT의 값은 평균중심화(centering)된 값임.

귀모형의 검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BRD를 포함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BRD는 법적판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47$, $p<.01$, $OR=0.954$. 그러나 유죄가능성과 BRD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IT를 포함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IT는 법적판단을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128$, $p=.058$, $OR=0.880$. 법적판단에 대한 유죄가능성과 IT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011$, $p=.088$, $OR=0.989$.

위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BRD와 IT의 역치로서의 기능비교를 시도한 기존 연구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죄가능성과 IT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IT가 낮은 경우의 유죄가능성과 법적판단의 (예측된) 관계 및 IT가 높은 경우의 유죄가능성과 법적판단의 (예측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가 낮은 경우 유죄가능성의 평균(0) 주변에서 유죄판단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IT가 높은 경우 유죄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죄판단확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법적판단에 대한 평결범주의 효과는 '무죄표상'과 상호작용하여 역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역치변화량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대한 이론적 역치와 개인의 역치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평결범주의 효과

연구 결과,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은 평결범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바, 본 연구의 가설1은 검증되지 않았다.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참가자들은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참가자들보다 유죄판단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41.4% vs. 37.3%, $p=.622$).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죄/무죄'의 평결범주가 법률가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평결에서의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가 판결을 듣는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올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구자룡, 2021)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 제기는 형사사법체계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 유무와 별개로 '유죄/무죄' 평결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풍부한 법률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죄표상'과 유죄판단 역치

본 연구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관계분석에서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BRD 및 역치변화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254$, $r=-.237$). 그러나 IT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무죄표상'과 BRD의 관계

는 선행연구의 결과(한유화, 이우열, 2021)와 일치한다. 즉, BRD는 ‘무죄표상’이 강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죄판단 역치로서의 BRD와 ‘무죄표상’의 개념 및 Han(2021)의 이론에 따르면 이 두 변인은 정적 상관관계(무죄표상이 강할수록 낮은 역치)를 가져야 한다. 예측과 반대되는 이 결과는 법률적인 유죄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라는 범주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 서로 독립적인 기준이며 두 기준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기준은 공통원인(common cause)을 가질 수 있다. 수리적으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두 변인과 모두 관련된 어떤 변인이 있다면 이 변인의 존재가 두 변인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한다(Altman & Krzywinski, 2015). Han(2021)의 이론이 옳지 않더라도 즉, ‘무죄표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BRD가 모든 개인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된다면 그 값은 상수에 가까우므로 ‘무죄표상’ 측정치와 BRD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무죄표상’과 BRD는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방향과 다른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 두 변인 모두와 관련된 제3의 변인이 존재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죄표상’과 BRD는 모두 범주적 판단을 위한 기준(역치)을 의미하고, 두 변인의 부적 상관관계는(‘무죄표상’의 개념에 의해) 두 기준이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질 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제3의 변인은 의사결정의 기준과 관련된 개인의 동기 또는 성격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박광배, 김상준과 안정호(2017)는 법적판단에서의 오편을 회피하려는 동기와 의사결정의 기준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동기 또한 판단자가 높은 의사결정 기준을 사용하게 한다(Hofstede, Jonker, & Verwaart, 2008).

BRD와 마찬가지로 IT도 유죄판단을 위한 역치이므로 ‘무죄표상’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r=-.140$, $p=.104$).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IT와 ‘무죄표상’에 관해서도 제3변인의 존재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BRD와 달리 IT는 개인차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암묵적이며 개인적인 역치)이므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경우 IT 또는 ‘무죄표상’이 타당하게 추정되지 않았거나, ‘무죄표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죄표상’과 두 역치와의 관련성이 0이 아니라는 발견은 ‘무죄표상’이라는 개념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기에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T와 ‘무죄표상’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그 방향이 반대로 관찰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IT를 추정하는 방법에 기인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유화와 박광배(2018)의 연구에 기초하여 IT를 추정하였고, 선행연구들(한유화, 이우열, 2021; Han, 2021)에서는 IT 추정을 위해 기소유죄확률 대신에 ‘100-기소유죄확률’을 사용하였다. Han(2021)의 연구에서 제안한 이 변환은 역치료서의 IT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소유죄확률 대신에 ‘100-기소유죄확률’을 사용하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모형 그

그래프의 y축을 유죄판단 확률에서 무죄판단 확률(또는 1-유죄판단 확률)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IT를 그 값이 낮아질수록 유죄판단이 증가하고 높아질수록 무죄 또는 유죄 아님 판단이 감소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추정치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추정된 IT는 유죄판단 확률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 이론적으로 예측가능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 방법으로 추정된 IT와 BRD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본 연구자료에서는 $r=-.444$, $p<.001$), 이 관계는 IT가 BRD와 유사한 개념(모두 유죄판단을 위한 역치)이라는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추정한 IT는 '무죄표상'과는 예측되는 관계(정적 상관관계)를 갖지만 이론과 경험자료 모두를 통해 확인된 확고한 관계인 유죄 가능성과 유죄판단 확률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즉, IT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로 구분하여 유죄가능성과 유죄판단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죄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유죄판단 확률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그림 2의 y축이 역전된 형태의 그래프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Han(2021)이 제안한 변환이 적절하지 않은 변환이라고 판단하여 한유화와 박광배(2018)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IT와 '무죄표상'의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배심원 개인의 암묵적인 역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치와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개입하는 변인들의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IT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한유화와 박광배(2018)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사용되는 암묵적인 역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의 개발 및 정교한 추정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죄표상'의 측정과 역할

본 연구에서 '무죄표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행동목록 방법을 제안한 한유화와 이우열(202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행동목록 방법과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IT의 추정 방법 문제와 무관하게 즉, 한유화와 이우열(2021)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에서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BRD 및 IT와 0에 가까운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추정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과 다른 변인들의 관계는 Han(2021)의 연구 이후 재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행동목록 방법이 확률추정 방법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방법임을 의미한다. '무죄표상' 개념의 타당도와는 별개로 행동목록 방법으로 측정된 '무죄표상'은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표상'이 최근에 제안된 개념이고, 관련 연구가 현재까지 두 편에 그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개념 구체화를 위한 심층적인 문헌검토와 심리적 개념의 존재 및 측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검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죄표상'이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표상인 바, 법률적 의미의 무죄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학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무죄표상'과 법률적 의미의 무죄 개념이 구분되

지 않을 수 있다. 즉, ‘무죄표상’의 개념 구체화와 측정에는 ‘무죄표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차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법적판단을 위한 역치의 변화량 사이의 관계가 그들이 제시받은 평결범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3). 역치변화량에 대한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과 역치변화량의 관계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이 결과는 평결범주를 제시받으면서 ‘무죄’라는 단어를 듣는 것이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무죄개념(무죄표상)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무죄표상’이 역치변화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무죄표상’ 수준은 평결범주가 제시되기 전에 측정되었으며, 제시받은 평결범주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t(135) = -0.181, p = .8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표상’이 한 실험조건에서만 작용했다는 점은 위 추론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결범주는 법적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무죄표상’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역치(IT)를 이론적인 유죄판단의 기준인 BRD로부터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작된 변인은 평결범주뿐이므로 이러한 관계의 방향에 대한 추론은 추후에 실험적으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이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를 ‘유죄/무죄’가 아닌 ‘유죄/유죄아님’ 또는 ‘무죄표상’을 연상시키지

않는 다른 평결범주명으로 변경한다면 일반인들의 유죄판단 기준이 BRD 해석 수준에서 멀어져 불확실한 유죄판단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죄판단 역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높은 수준의 유죄판단 역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적 ‘무죄’의 의미와 일반적인 ‘무죄’ 사이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간접적인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피고인(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무고한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변화일 수 있다. 이 변화(의 요구)는 ‘무죄’가 ‘유죄아님’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언어의 변경이 아니고 사실인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유죄판단 기준에 더 집중하자는 제안이다(박광배, 2020, p. 493).

BRD와 IT의 비교

배심원 의사결정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BRD에 대한 해석(수량화된 BRD)을 배심원들이 사용하는 유죄판단의 기준이라고 가정한다(예를 들면, Anderson, 1981; Kerr, 1993; Pennington & Hastie, 1981; Schum & Martin, 1993). 그러나 몇몇 연구 결과들로부터 확인된 바, BRD는 배심원들의 법적판단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예를 들면, Dane, 1985; Dhami, 2008; Han, 2021). 이것은 배심원들이 법적판단에 사용하는 실제 기준과 법이 요구하는 이론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Han(2021)은 실제로 사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은 BRD와 IT 중 무엇이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더 잘 예측하는

지 즉, 역치료서 더 잘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일반인들의 법적판단에 대한 BRD와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IT 와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IT의 수준에 따라 피고인 유죄가능성과 유죄판단 확률의 관계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2). BRD와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과 BRD 또는 IT가 역치료로 기능한다면 법적판단의 재료인 유죄가능성과의 비교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주효과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 효과가 전혀 없는 BRD보다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p<.1$) IT가 법적 판단의 실제 역치료에 대한 더 좋은 추정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를 통해 IT가 낮은 경우에는 유죄가능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유죄판단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IT가 높은 경우에는 유죄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죄판단 확률이 비교적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낮은 IT의 유죄판단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의 유죄가능성이 평균 주변이라는 것은 IT가 낮게 추정된 사람들은 피고인 유죄가능성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높은 확신감에 도달하기 전에 유죄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IT의 유죄판단 확률은 IT가 낮은 경우와 달리 서서히 증가하며 높은 유죄가능성에서도 비교적 낮게 유지된다. 유죄가능성과 유죄판단 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유죄판단에 대한 저항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IT가 높은 사람들은 유죄판단을 위해 피고인의 높은 유죄가능

성 이외의 무언가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협의를 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증거) 이외에 법적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들 예를 들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피고인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이나 배심 설시문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법률을 지키려는 의도, 오판을 회피하려는 동기 등 다양한 인지적 또는 성격적인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유죄가능성 및 유죄판단 역치료 함께 이 요인 중 무엇이 배심원들의 유죄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된다면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는 재판시나리오를 이용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던바, 불성실한 응답이 많아 자료의 손실이 많았다. 자료의 손실을 줄이고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수집보다는 실제 실험실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실험실 상황에서 충분한 사례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변인들간의 복잡한 관련성을 하나의 모형에서 검증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대한 평결범주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제시받는 평결범주의 범주명과 개인의 '무죄표상'이 상호작용하여 유죄판단을 위한 역치를 낮출 가능성은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무

'죄표상'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의 존재와 타당한 측정을 위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적 역치와 개인의 역치 간 차이를 '무죄표상'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배심원들이 그들의 유죄판단 기준을 BRD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안내할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 특히, 평결법주가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 근거를 일부 제공함으로써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자룡 (2021. 6. 11). '무죄' 맞나요?.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0687> 에서 2022. 1. 22에 최종검색.
- 국립국어원 (202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에서 2022. 01. 22 자료 얻음.
- 김대성 (201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0, 41-60.
- 박광배 (2020). 형사소송법의 이념적 딜레마: 실체진실주의. In 윤진수 등 (2020). 법의 딜레마. (pp. 482-494). 법문사.
- 박광배, 김상준, 안정호 (2017). 무죄론. 학지사.
- 이승택 (2017. 5. 24).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18284> 에서 2022. 1. 22에 최종검색.
- 장중식 (2009).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학연구, 36, 401-422.
- 전성훈 (2020. 8. 4). 골프채가 밝힌 강간치상 사건.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55> 에서 2022. 1. 22에 최종 검색.
- 정진연 (2006). 국민참여재판에서 한국형 배심 제의 도입. 법학논총, 15, 1-22.
- 한유화, 박광배 (2017).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순환논증의 오류와 인과추론 경향성. 한국심리학회지: 법, 8(2), 61-79.
- 한유화, 박광배 (2018).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대추정된 사후확률과 유무죄 판단의 역치. 한국심리학회지: 법, 9(1), 1-19.
- 한유화, 이우열 (2021). 연속적 간격법의 소개 와 활용법_행동의 비난가능성 측정을 중심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4), 635-666.
- Anderson, N. H. (1981). *Foundations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Altman, N., & Krzywinski, M. (2015). Points of Significance: Association, correlation and causation. *Nature methods*, 12(10), 899-900.
- Arce-Ferrer, A. J. (2006). An investigation into the factors influencing extreme-response sty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3), 374-392.
- Dane, F. C. (1985). In search of reasonable doubt. *Law and Human Behavior*, 9, 141-158.
- Dhami, M. K. (2008). On measuring quantitative interpretations of reasonable doub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4, 353-363. doi:10.1037/a0013344
- Gannon, K. M., & Ostrom, T. M. (1996). How

- meaning is given to rating scales: The effects of response language on category ac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4), 337 - 360.
- Han, Y. (2021). Quantifying an implicit legal threshold and mental representations of 'Innocent': a comparison of implicit and theoretical thresholds for a legal decision.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32(6), 836-860.
- Hofstede, G. J., Jonker, C. M., & Verwaart, T. (2008, April). Modeling culture in trade: uncertainty avoidance. In *SpringSim* (pp. 143-150).
- Kerr, N. (1993). Stochastic models of juror decision-making. In R.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making* (pp. 116 - 13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o, R., Schul, Y., & Burnstein, E. (2004). "I am not guilty" vs "I am innocent": Successful negation may depend on the schema used for its encod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433-449.
- Park, K. (2011). Estimating juror accuracy, juror 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Law and human behavior*, 35(4), 288-305.
- Park, K., Han, Y. H., & Seong, Y. R. (2010). The effect of double judgments on public confidence in court decisions for the trial by citizen-participa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38(4), 166-174.
- Pennington, N. & Hastie, R. (1981). Juror decision-making models: the generalization gap. *Psychological Bulletin*, 89(2), 246 - 287.
- Pi, D., Parisi, F., & Luppi, B. (2018). Quantifying Reasonable Doubt. *Rutgers University Law Review*, 72(2).
- Schaeffer, N. C., & Presser, S. (2003). The science of asking ques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65-88.
- Schum, D. A. & Martin, A. W. (1993). Formal and empirical research on cascaded inference in jurisprudence. In R.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making* (pp. 136 - 17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z, N., Knauper, B., Hippler, H. J., Noelle-Neumann, E., & Clark, L. (1991). Rating scales: Numeric values may change the meaning of scale labels. *Public Opinion Quarterly*, 55(4), 570-582.
- Wildt, A. R., & Mazis, M. B. (1978). Determinants of scale response: Label versus posi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2), 261-267.
- Wright, D. B., Strubler, K. A., & Vallano, J. P. (2011). Statistical techniques for juror and jury research.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6(1), 90-125.

1 차원고접수 : 2022. 01. 24.

심사통과접수 : 2022. 03. 07.

최종원고접수 : 2022. 03. 09.

**The verdict category and legal decision:
Focused on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Yuhwa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effect of the verdict category of lay-participation trial in Korea on the legal decision of layperson and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in the process. Representation of ‘innocent’ refers to a psychological threshold for deciding someone’s innocence (no fault or sin) in a general sense. The functions as a threshold for a legal decision of ‘beyond a reasonable doubt (BRD)’ and the individual threshold (IT), regarded as a standard for judgment of guilt established by law and an estimate of an individual’s threshold, respectively, were compared. This study used a 2×2 complete factorial design in which the verdict category (guilty/innocent vs. guilty/not guilty) and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low vs. high) were manipulated. Data from 137 lay-peopl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online experiment was analyzed. The experiment’s procedure was in the order of measuring ‘representation of innocent’ and the likelihood of guilt of an accused, presenting one of four trial vignettes, and obtaining legal decisions (verdict confidence and estimation of the likelihood of guilt for the defenda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verdict categor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gal decision of layperson. However, the guilty verdict rate of the ‘guilty/innocent’ condition tend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guilty/not guilty’ condition. The layperson’s representation of ‘innocent’ and the verdict category had an interaction effect on the difference between BRD and IT (threshold change)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In the ‘guilty/innocent’ condition, the threshold change varying with layperson’s representation of ‘innocent’ was larger than in the ‘guilty/not guilty’ condition. In comparing the function of BRD and IT, I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ay person’s legal decisi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by interacting with the likelihood of guilt for the defendant.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 better threshold estimator than BR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d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effect of the verdict category of lay-participation trial in Korea, which is a problem often raised among lawyers, and suggested logical reasoning and empirical grounds for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possible effect.

Key words : lay-participation trial in Korea, verdict category, representation of ‘innocent’, threshold for verdict, BRD